

나.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

다.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

라.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

마. 설해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

바. 도로공사 계획의 공고

사. 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

아. 접도구역의 지정 등

자. 비 관리청 사업의 지도감독

58. 도로경관 조성사업

59.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

60. 가로등, 보안등, 육교등, 터널등의 시설 및 유지관리

61. 구청사 전기설비의 시설 및 유지관리

62. 지하차도 및 지하도 전기시설 유지관리

63. 주택건설촉진법중 전기분야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

64. 자가용 전기 공작물 및 전기에 관한 사항

65.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사항

“제20조부터 제21조까지”를 “제23조부터 제24조까지”로 하고, 제23조(중전의 제20조)를 다음과 같이 하며, “제5호부터 제13호까지, 제19호 및 제36호”를 삭제하고, “제14호부터 제18호까지”를 “제5호부터 제9호까지”로 하며, “제20호부터 제35호까지”를 “제10호부터 제25호까지”로 하고, “제37호부터 제40호까지”를 “제26호부터 제29호까지”로 하며, “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22호, 제23호, 제25호 및 제29호”를 다음과 같이 하고, “제30호부터 제39호까지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건축과)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2. 건축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
3. 신발생 위법건축물(무허가) 정비등에 대한 사무

4. 항촉적출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등에 관한 사무

22.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

가. 사업승인

나. 착공신고

다. 사용검사

라. 경미한 변경처리 및 사업계획 변경

마.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

바. 공사장 안전점검

사. 임시사용승인

아. 감정평가 등록 및 의뢰

- 자. 감리등록 및 변경관계
- 차.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
- 23. 공동주택관리
 - 가.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(변경) 신고
 - 나. 공동주택 하자보수
 - 다.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
 - 라. 공동주택 행위허가, 신고
 - 마.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
 - 바. 노후·불량주택(재난위험시설물) 안전점검
 - 사. 시트법대상건축물 안전점검
 - 아.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
 - 자.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
 - 차. 주택관리업등록(변경)
- 25. 임대주택
 - 가. 사업자 등록(변경) 신고
 - 나. 임대조건 신고
 - 다.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
- 29. 건축물사용승인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
- 30. 재건축에 관한 사항
 - 가. 재건축조합 설립인가
 - 나. 사업시행인가
 - 다. 착공신고
 - 라.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 - 마. 공사장 안전점검
 - 바. 사용검사
 - 사. 임시사용승인
 - 아. 감리등록 및 변경관계
 - 자.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
- 31. 구청사 신·증축 용역감독 및 시공감독
- 32. 동청사 신·증축 용역감독 및 시공감독
- 33. 공공건축물 신·증축 용역감독 및 시공감독
- 34. 구청사 시설물 보수관리(조경분야 제외)
- 35. 구청사 시설물 관리용 자재 기구의 출납 보관
- 36. 구유청사 및 시설물 영선관리(단, 보건소, 검단출장소 제외)
- 37. 청사 시설관리 용역업체 및 청소 지도감독
- 38. 공공건축물 신·증축, 대수선 설계 및 시공감독(사업계획, 예산확보, 토지매입절차 제외)

39. 공공건축물 신·증축 및 대수선 사업예산 지출관리

제24조(중전의 제21조)중 “제21호부터 제54호까지” 및 “제61호”를 삭제하고, “제55호부터 제60호까지”를 “제21호부터 제26호까지”로 하며, “제62호”를 “제27호”로 한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(녹지경관과) 녹지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,

1. 조림 및 육림
2. 산림보호
3. 임정 및 임업금융
4. 도시녹화
5. 임산물가공 이용
6. 종묘 판매업 등록
7. 임야매매 증명
8. 산지오염 방지
9. 산불예방 및 진화
10. 산림내 건조물 관리
11. 산림 병충해 방지
12. 산사태 예방·복구
13.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
14. 공유(시·구유)재산중 임야의 관리
15. 사방
16. 가로수 식재 및 관리
17. 산지이용
18. 산림형질변경·허가(도시계획외)
19. 민유림 벌채(도시계획외)
20. 임산물 굴 채취(도시계획외)
21. 임업통계
22. 보안문서 생산관리(충무계획)
23. 공동주택 조경협회
24. 산림 공익근무요원 지도관리
25. 약수터의 주변(시설물등) 정비
26. 공원·녹지 종합계획 수립
27. 도시공원 조성
28. 도시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
29. 녹지조성
30. 녹지시설 유지관리
31.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

32.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징수·부과
 33. 공원·녹지감시 공익요원 지도관리
 34. 도시계획사업(공원)에 따른 토지,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
 35.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36.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
 37.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
 38.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
 39. 미협의를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
 40.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
 41. 시설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
 42.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
 43. 광고물 안전도 검사실시 및 위탁
 44. 광고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 45. 광고물 과태료의 부과
 46. 옥외광고물업의 지도·관리
 47.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운영
 48. 광고물의 사후관리
 49. 도시개성 창조사업(C·I·P) 심벌마크, 로고체, 전용색상등 상징물 제정사용
- “제22조부터 제23조까지”를 “제26조부터 제27조까지”로 하고, 제26조(중전의 제22조)를 다음과 같이 하며, “제89호부터 제90호까지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6조(토지정보과)**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89. 기반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관련
 90.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
- 제27조(중전의 제23조)중 “제19호부터 제65호까지”를 삭제하고, “제66호”를 “제19호”로 하며, “제20호부터 제25호까지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0. 스쿨존 시설 및 운영
 21. 교통시설물 유지관리
 22. 기계식 주차장 지도감독
 23.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감독
 24. 거주지 우선 주차제 운영
 25. 승용차 함께타기 시책 추진
-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8조(교통민원과)** 교통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(택시, 버스, 화물)
 2. 자동차정류장 설치에 관한 사항

32.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징수·부과
 33. 공원·녹지감시 공익요원 지도관리
 34. 도시계획사업(공원)에 따른 토지,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
 35.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36.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
 37.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
 38.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
 39.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
 40.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
 41. 시설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
 42.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
 43. 광고물 안전도 검사실시 및 위탁
 44. 광고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 45. 광고물 과태료의 부과
 46. 옥외광고물업의 지도·관리
 47.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운영
 48. 광고물의 사후관리
 49. 도시개성 창조사업(C·I·P) 심벌마크, 로고체, 전용색상등 상징물 제정사용
- “제22조부터 제23조까지”를 “제26조부터 제27조까지”로 하고, 제26조(중전의 제22조)를 다음과 같이 하며, “제89호부터 제90호까지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6조(토지정보과)**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89. 기반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관련
 90.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
- 제27조(중전의 제23조)중 “제19호부터 제65호까지”를 삭제하고, “제66호”를 “제19호”로 하며, “제20호부터 제25호까지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0. 스쿨존 시설 및 운영
 21. 교통시설물 유지관리
 22. 기계식 주차장 지도감독
 23.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감독
 24. 거주지 우선 주차제 운영
 25. 승용차 함께타기 시책 추진
-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8조(교통민원과)** 교통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(택시, 버스, 화물)
 2. 자동차정류장 설치에 관한 사항